

 교육부				설명자료 2020. 3. 3.(화) 배포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	담당자	팀 장 사무관	이홍열 (☎ 044-203-6776) 신소영 (☎ 044-203-6312)	

장애대학생이 원격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- 언론시명 / 보도일시 : 국민일보김지훈 기재, 뉴시스최동준 기재 / 2020. 3. 3(화)
- 제목 : 입모양 안 보이는 온라인 강의...방치된 청각장애 대학생
대학가의 온라인 전면대체...청각장애 학생들은 “막막해”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- 교육부는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·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‘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(기존,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)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《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》

- (일반) 대학 내 학습지원(강의·시험 대필 등)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·편의 지원
 - (전문) 수어통역사, 속기사,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·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
-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센터(또는 학생지원부서)에 신청하고,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.

-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통해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발표('20.3.2.)하였습니다.
- 장애대학생이 자택에서 온라인(원격)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속기, 수어통역 등을 '교육활동 지원 사업'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※ 교육부에서는 대학에서 원격수업 등을 진행할 때에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하도록 안내하였음(2.28)
- 또한, 2020년 1학기는 학사일정 변동 등을 고려하여 많은 장애대학생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기한도 2주 연장 하였습니다.
 - ※ 신청기간 연장 : (당초) 2.24.(월)~3.13.(금) → (변경) 2.24.(월)~3.27.(금)
-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장애대학생이 대학에서 공부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.

【붙임】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개요



□ **추진 목적**

- (장애대학생)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
- (대학·사회)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

□ **추진 근거**
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5조 및 제31조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
□ **지원대상**

- (대학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및 제33조*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

*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

- (학생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의 ‘장애인의 장애 정도’에 의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우선 지원

※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
□ **지원내용**

-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·대필 등 대학 내 생활 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 지원

《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》

- (일반) 대학 내 학습지원(강의·시험 대필 등)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·편의 지원
- (전문) 수어통역사, 속기사,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·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